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[교통행정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교통행정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과 신기술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. 3. 11일부터 3.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2. 4.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에게 생소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교육 실시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0082203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2. 4. / 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교통행정과장)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과 신기술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~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및 조례안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2. 3. 11. ~ 3. 3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·장비·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동차정비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.
2. “자동차정비사업자”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종사자”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
 2.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
 3.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
 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產) 관리
 - 차.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- 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 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 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
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의 유치 · 지원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

□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69조의3(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(이하 "정비전문인력"이라 한다)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2.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3.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· 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